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이길재 의원, 이우재 의원, 이완구 의원(좌로부터)

“3당 ‘3이(李)의원’ 돼지콜레라 박멸 발벗고 나섰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나선 이길재 · 이우재 · 이완구 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3당
‘3이(李) 의원’ 이 우리 나라
양돈산업의 사활이 걸린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 홍 보 부 -

국 민회의 이길재 의원(광주 북을)과 한나라당 이우재 의원(서울 금천), 자민련 이완구 의원(충남 청양·홍성) 등 3인은 지난 5월 31일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3인 공동 발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3이(李)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돼지

콜레라는 OIE(국제수역사무국)가 지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이 병이 발생하는 나라는 발생하지 않는 나라로 돼지는 물론 돼지고기도 수출할 수 없게 규정돼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나라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은 93년부터 돼지콜레라 박멸대책을 추진,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는 2000년 10월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중단한 후 6개월 정도 관찰한 뒤 오는 2001년 4월 비발생 청정지역을 선언할 계획으로 만약 우리가 오는 2001년 4월에 비발생 선언을 하지 못할 경우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어 2001년 국내 양돈산업에 3조7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이(李) 의원은 “가축방역사

업을 활성화 하고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함으로써 가축질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축산물 수출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3이(李) 의원’이 추진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주요골자

- ▲축산관련 기관·단체에 가축방역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가축전염병 발견 신고의무자 범위를 동물약품, 사료판매업자 등으로 확대
- ▲가축의 격리·역류 명령을 위반한 소유자 등에 대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거나 사육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의 이동제한·교통차단 등의 지역 안에서 사육하는 가축중 도태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조치로 인한 양축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함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축산 관련기관·단체의 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농가로부터 예방주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방역을 유도함
-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의 소유자 등이 실시한 가축에 대한 주사와 축사 소독 등 가축방역 상황을 조사하거나 가축에 대한 주사를 유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전염병 발견 신고 의무자, 격리·이동제한 등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함

돼지콜레라 박멸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